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용자상환금 등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도지사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 (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계정 (이하 "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한다.

④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용자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용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용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2 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운동

제6조 (용자대상업체) 운전자금의 용자대상 업체는 충청북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3. 공업단지 입주업체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6.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 (용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도초에 용자금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용자신청) ①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증평출장소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충북지회장 (이하 "중소기업충북지회장"이라 한다)과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이하 "상공회의소 회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용자신청서 (별지서식)
2. 공장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 입증자료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또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②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중명출장소장 또는 중소기업충복지회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을 경유할 때에는 시장·군수·중명출장소장 또는 중소기업충복지회장과 상공회의소회장은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용자대상자 선정) ①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용자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용자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⑥용자절차, 이차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추가용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다.

제12조 (용자금의 상환) ①용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도지사는 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 3 장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용

제13조 (용자대상업체)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등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도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
2.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
3.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
4. 자동화, 정보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5. 자동화, 개발기술사업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6.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동시추진 중소기업
7. 기타 도지사가 성장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

제14조 (용자조건 등) 구조개선자금은 용자대상업체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용자하되 용자조건,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용자상환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용자계획의 공고) 용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 (변경사항 통보) 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와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후관리) 도지사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용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용자상환,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 표)

1. 용자조건

금 리	용 자 기 간	용 자 금 액
연 6%	8년 이내 (3년 거치기간 포함)	소요자금의 100%

2.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가. 용자대상

- 상공자원부가 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6개 유형업체(자동화, 정보화, 개발 기술사업화 등)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되
- 6개 유형업체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구조개선추진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와 사전 협의, 관내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나. 용자대상자 선정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일 것
-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할 것
- 금융거래가 정상적일 것

다.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 기업의 건실도를 평가한 후 성장가능성 및 사업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기업건실도(100점)를 평가, 40점 이상이고 대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성장가능성(60점) 및 사업타당성(40점)을 평가, 5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 선정
 - 복합유형은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등 기본유형 선정기준을 동시 적용
- 대(모)기업 추천 또는 산업파급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가점

3. 용자대상자 선정절차

가. 상담 및 신청

- 구조개선 추진 지역본부 상담창구에서 신청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 필요시 자동화등 전문분야별 지원기관을 알선
- 구조개선추진지역본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나. 서류심사

- 선정기준상 선정요건 및 기업건실도 등을 일차적으로 심사
 - 신보, 기술신보 담당자는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보증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추천이전에 신청인에게 통보
- 서류심사에 통과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에 착수

다. 기업진단

- 사업유형에 따라 중진공 또는 생기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진단팀을 지정
 - 기업진단팀은 경영담당 1인, 기술담당 1인으로 1개팀을 구성
- 대상기업에 사전통보 후 현장실사 실시 및 진단평가표 작성

라. 선정위원회 심의 및 추천

- 기업진단팀의 진단평가표를 기준으로 구조개선 추진 지역본부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여부 및 자금소요규모를 결정
 - 기업진단팀의 특별한 의견제시등 필요한 경우 관계자 의견을 직접 청취
- 선정된 경우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장이 당해기업,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 추천을 통보

4. 용자금 상환

- 용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별지서식)

용 자 신 청 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용자신청액 : 원
- 업체 현황 :

업 종		공장규모	대 지 건 물 동	평 평
생 산	주생산품 : 년간생산액 : 백만원	종업원	생산직 : 사무직 : 계	평 평
자 본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계	수 출	년 간	천불

○ 사 업 계 획

사업기간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소요자금	자기자금	백만원	사 채	백만원
조달방법	용 자	백만원	기 타	백만원
용 자 금 상환방법				

위와같이 용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귀하